

인권정보자료실
NGO1.13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창립대회 자료집

인권정보자료실
NGO1.13

때 : 1994년 6월 20일(월) 오후 6시

곳 : 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강당

대 회 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단체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국인권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한국인권단체협의회를 창립하고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인권이란 우리에게 사전이나 책자에서나 볼 수 있는 낯설은 단어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그만큼 인권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고 억압된 사회에서 살아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운동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거대한 줄기 속에 다른 사회운동들과 함께 전진, 발전하여 왔습니다. 지난 시절 여기 모인 인권운동단체들의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헌은 참으로 크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군사독재의 탄압과 이에 맞서는 싸움의 현장에는 이 자리에 모인 인권단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의 성명은 독재권력의 심장에 꽂히는 날카로운 비수였고,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 어머니, 아버지의 처절한 몸부림은 사회의 한줄기 빛이었으며, 극심한 탄압도 마다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싸움은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결국 군사독재를 무너뜨린 민주화라는 큰 흐름의 원천이었음을 우리 모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이끌어 온 단체들과 회원들의 피와 땀의 결실입니다. 인권운동단체들은 인권탄압에 맞서 싸우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힘을 모아 공통의 과제를 풀어나갈 새로운 틀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1993년 6월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를 계기로 "유엔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이 대회를 준비하고 참가하면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소중한 경험을 통하여 연대활동의 필요성과 그 놀라운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발전을 위한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창립은 인권운동역사에 일대 획을 긋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화,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화운동도 그 영역을 보다 넓고 깊이하고자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권운동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야만 합니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이러한 역할 수행을 자임하고 그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부당한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며 나아가 진정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하여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확보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토록 할 것이며 특히 수십년간 인권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과거청산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또한 인권이란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인권교육과 국제연대활동에 진력할 예정입니다.

이제 한국인권단체협의회 힘찬 깃발이 높이 올려졌습니다.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의 일선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훌륭한 활동가들과 참여단체들이 있는 한 우리 협의회의 앞날은 매우 밝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걸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동안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창립을 위하여 애써온 참여단체 대표와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물심양면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날까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 6. 20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대표 고 영 구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시기 우리나라는 외세의 지배와 분단체제, 군사독재정권의 지배하에서 초보적 인권조차 무참히 유린되어 왔습니다. 소위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지금도 보건, 환경, 노동, 교육, 여성 등 제반 영역에서 국민의 참다운 권리가 실현되지 못함은 물론, 정치적·시민적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우리나라 인권운동은 지난한 노력을 통하여 인권상황을 개선시켜 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인권단체들이 작년 유엔세계인권대회에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단을 파견하여 큰 역할을 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자칫 정부의 일방적인 보고로 잘못 알려질 뻔한 우리의 인권현실을 전세계에 바로 알려냈으며 많은 국가의 민간단체들과 국제적 연대를 실현한 것입니다. 또 공동으로 세계인권대회에 참가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성과를 계승하여 우리나라 인권운동의 발전을 위한 공동평가와 사업을 벌여내고 마침내 한국인권단체협의회를 출범시켜 내게 되었습니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그동안 국내외의 인권신장을 위해 함께해 온 인권단체 사이의 연대와 협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후 우리 인권단체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응을 하면서도 한국인권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의 인권문제에 적극 연대하기를 바랍니다. 외세와 분단에 가위눌리고 오랜 독재에 시달려 온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힘차게 출범한 한국인권단체협의회가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의 철폐,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과거청산 - 특히 군부독재 잔재청산과 책임자 처벌, 인권에 기반하기보다는 힘의 논리로 회귀하면서 인권탄압을 재개하는 정권을 견제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 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인권운동은 국제연대를 실현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우리 운동의 모범이 있습니다. 나아가 인권운동이 자주화와 통일 등 제반 영역을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풍부화시켜 인권운동의 영역을 넓혀 나가기를 바랍니다. 향후 전국연합도 더욱 더 인권운동에 대한 이해와 연대를 높이고 참인권을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44번째 감옥살이를 이어가고 있는 세계 최장기수의 존재는 우리 인권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어려운 조건에서 누구보다 힘찬 운동을 해오신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면서 축하에 대신합니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발전에 기원합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이 창 복

이번에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민간인권단체들이 모여 인권단체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인권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마련한 것으로서 크게 환영한다. 오래전부터 소망하던 일이 이제야 그 결실을 보게 되어 무엇보다 기뻐하면서 앞으로 활력있는 인권운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과거 군사문화에 바탕을 둔 권위주의 통치시대를 겪어오면서 우리는 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억눌리고 침해된 처참한 상황을 경험하였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도 국가안보를 앞세워 함부로 가볍게 다루는 공권력의 횡포도 겪어 보았다. 성장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어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현상도 목격하였다. 이와같은 인권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한때 국제사회에서 "인권 후진국"으로 낙인을 찍히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는 인류가 공통으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므로 이는 특정 국가의 국내문제가 아닌 것으로 규정되고 국제적 관심사로 다루고 있던 시대에도, 어리석은 우리의 위정자들은 인권을 한낱 국내문제로 잘못 알고 함부로 다룬 경우가 적지 않았다.

권력에 의한 인권탄압은 급기야 선량한 국민들로 하여금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였다. 이런 연유로 70년대 중반이후부터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부여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국가가 이를 충실하게 보호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하므로 국가에 대하여서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 스스로 그 해결방도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권운동은 정부쪽보다도 비정부조직인 민간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유엔인권회의에서 정부대표보다는 비정부조직(NGO) 대표들이 보다 활발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로 이와같은 점을 반영한다고 본다.

이제 우리나라의 민간인권단체들도 조직과 활동면에서 많이 성장하고 있다. 더구나 몇차례 국제인권회의에 참가하여 외국의 인권단체와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므로써 나름대로 내실을 다져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국내 인권단체들이 상호 연대하여 지혜와 힘을 결집하면 조직과 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 한국인권단체협의회를 발족하게 된 것은 인권운동의 큰 진전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차원높은 인권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 세 중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창립 경과보고

-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유엔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활동을 계승하는 단체로 그 창립준비과정은 공대위의 집행위와 대표자 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1993년 3월에 창립한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한시적인 조직으로서 4월 유엔세계인권대회 아태지역준비회의와 6월에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대회에 조직으로 참여하여 활동을 펴(참여 활동에 대하여 「유엔세계인권대회자료집」(공대위 자료집) 참조)
- 1993년 8월, 9월에 걸쳐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참가했던 단체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후속사업을 포함하여 상설적인 사업을 담당할 인권운동조직으로 “인권운동의 조직적 전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논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인식을 확인함
 - 1) 인권운동을 위해 전문적 활동가 양성이 중요함
 - 2) 국제연대에 있어 한국이 수혜자로서의 위치를 벗어나 적극적인 활동을 펴나가야 함
 - 3) 계획적인 인권운동을 위해 인권관련 정보의 집중과 체계화가 단체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함
 - 4) 인권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또는 사업 조정을 위하여 협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함
- 공대위의 후속작업으로
 국내사업; 공대위가 수집한 자료정리와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자료집 발간 추진
 국제연대활동; 동북아시아의 민간인권단체의 연락을 맡아 활동진행
 이 과정에서 계속하여 열린 집행위에서 새로운 상설적인 인권단체연대조직에 대한 위상과 역할, 그리고 현실적 문제(재정 및 역량등)를 토론함
- 1993년 12월 14일 집행위원회에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건설을 위한 제안문’을 소위에서 작성하여 제출

- 1994년 3월 21일 집행위원장이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건설을 위한 제안문”을 제출, 제안문은 세계인권대회 공대위 의의로서 국내인권단체들이 결성한 본격적 연대기구였으며 조직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보여주었고, 공대위 활동을 통하여 우리 민간인권운동은 최초로 국제적 지평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하였음
 국제연대활동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임무로 국가보안법 행사에 대한 선도의 책무, 아태 조정위원회 구성원으로 활약, 촉진팀의 일원으로 전 세계 민간단체 연대활동을 짚었음
 공대위의 성과를 계승하고 특히 이미 우리에게 부여된 국제 인권활동의 책무를 수행할 조직적 대안을 마련해야 함. 주요사업과 회원단체의 자격, 운영원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논의 조직 경로로 공대위의 집행위원회가 상설협의체에 관한 제안을 확정, 공대위 가입단체 및 참관 단체들에게 배포한 후 대표자회의에 상신하기로, 협의체에는 공대위에 가입하지 않았던 단체들도 널리 가입하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하기로 함
- 1994 4월 15일 공대위 제4차 대표자회의에서 상설체에 대한 안건이 논의됨 회칙 가안이 검토됨. 회칙중 양해사항으로 상설 연락처를 우선 민변으로 하고 협의회의 자료는 우선 인권운동 사랑방이 가입을 전제로 관리하기로 결정. 회의에 참석한 민변, 민가협,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한교협 인권위원회, 유가협,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참가할 의사를 밝힘
- 1994년 5월 16일 제21차 공대위 집행위, 6월 1일 22차 집행위에서 인권단체협의회 창립대회 준비 및 공대위 해산을 위한 회의 진행
- 1994년 6월 1일 현재 민변, 민가협, 유가협, 불교 인권위, 천주교 인권위, 한교협 인권위, 인권운동 사랑방, 민주법연, 전국연합 인권위 가입 확정
- 1994년 6월 20일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창립 대표자회의 개최. 회칙과 사업안, 임원선출이 이루어짐

「한국인권단체협의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이름) 본회는 한국인권단체협의회(약칭 “인권협”, 영문 이름 “Korea Human Rights Network”, 영문 약칭 “KOHNET”)라 부른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취지와 성과를 조직적으로 계승하여 인권단체들 사이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고 국내외의 인권신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인권현안에 대한 협의
2. 인권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배포
3. 인권교육
4. 국제인권활동

제 2 장 회 원

제4조 (가입)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재적 회원단체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대표자회의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 (권리와 의무) 회원단체는 본회의 모든 회의에 출석하고 발언하며 의결에 참가할 권리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그 결의를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조 (탈퇴) 회원단체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본회로부터 탈퇴할 수 있으며, 대표자회의 또는 집행

위원회에 연속 2회 출석하지 않거나 3개월 분의 회비의 납입을 지체한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징계) 회원단체가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적 회원단체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대표자회의의 의결로 제명, 6개월 이하의 정권 또는 경고에 처할 수 있다.

제 3 장 기 관

제8조 (대표자회의) 대표자회의는 회원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연 2회 이상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재적 회원단체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상임대표는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 (상임대표) ①상임대표는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②상임대표는 대표자회의에서 호선한다.

제10조 (집행위원회) ①집행위원회는 대표자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상임대표의 지시를 받아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②집행위원회는 각 회원단체가 지명하는 실무대표로 구성하며 월 1회 이상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재적 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간사단체의 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단체) ①간사단체는 집행위원회를 보좌하여 본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간사단체는 대표자회의가 지명한다.

제12조 (특별위원회) 특별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표자회의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감사) ①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여 연 1회 대표자회의에 보고 한다.
②감사는 대표자회의가 선출한다.

제14조 (임기) 본회의 모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5조 (의결) 대표자회의는 재적 회원단체 과반수의 찬성으로, 집행위원회는 재적 회원단체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단체 과반수 찬성으로, 각 의결한다.

제 4 장 재 정

제16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및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 장 회칙의 개정과 보충

제18조 (회칙의 개정) 이 회칙은 재적 회원단체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대표자회의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19조 (보칙)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주주의 원칙과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 6 장 부 칙

제20조 (시행일) 이 회칙은 199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양 해 사 항

회칙에 규정하지 않지만 회원단체들 서로 간에 다음 사항을 양행한다.

1. 상임대표는 각 회원단체가 가나다 순으로 돌아가면서 맡는다. 간사단체는 상임대표를 내지 않는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맡는다.
2. 국외에 알릴 상설 연락처를 두며 우선 민변 사무실로 한다.
3. 협의회의 자료는 한 회원단체가 상시 관리하도록 하며 우선 인권운동 사랑방으로 한다.
4. 가입회비를 30만원으로, 월 회비를 5만원으로 한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사업계획서

1. 인권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조정

- 월 1회 이상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협의 및 조정한다.
- 94년도 중심사업
 - ; 과거에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한 활동 : 법적 구제활동등
 - ; 인권침해 법률제도, 관행 시정에 관한 협의
 - ;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협의

2. 인권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배포

- 국내자료
 - 1차단계로 각 가입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색인화
 - 목적은 기초적인 수준에서 각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인권관련자료를 파악하는 것, 각 단체의 재량에 맞게 작성하여 집중시킴
- 해외정보
 - 각 사업별로 준비과정에서 수집(예; 세계여성대회, 개발정상회의)
 - 사업 주제별로 국내정보도 함께 수집

3. 인권교육

- 국제인권봉사회(International Service for HR, ISHR)의 교육 프로그램
 - 일정 장소 : 1994년 10월 6/7부터 3일간, 서울
 - 성격, 주제 : 「한국의 주요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국제기구 및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하의 실천적 전략적 접근을 위한 워크샵
 - 진행 : ISHR과 인권협
 - 주최 : 인권협

- 인권운동활동가 양성을 위한 인권포럼

일정 : 인권주간 기간동안 3- 5일

주제 : 인권의 각 영역에 대한여 소규모 토론형태로 세미나를 진행

4. 국제 인권 연대 활동

1) 아태지역 인권촉진단 활동 및

새로운 임시연락기구(NILC ; New Interim Liaison Committee) 관련 활동

-제네바에서 열린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민간단체 후속회의때 결정된 수입사항으로 동북아시아의 인권단체에게 정보를 나누는 연락업무

-제네바 세계인권대회 민간단체 후속회의 결과내용

①비엔나 회의에서 구성된 민간단체 연락기구(NGO Liaison Committee)를 새로운 임시연락기구(NILC)로 전환하며 정보교류의 역할을 계속/시작한다. NILC는 자동해체하고 NILC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지역 부문별 협의과정과 체계화를 지속하며 중요한 진척상황을 NILC에 보고함으로써 공유한다.

③1995년 2월 NILC회의를 개최하여 지속여부와 활동수준의 발전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④사무국은 캐나다의 INTERNET이 계속 맡되 역할은 정보유통 및 수집, 자료배포이다.

⑤NILC활동에 필요한 재정은 3인소위(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에서 책임지며(재정신청) 지출은 사무활동및 1995년 NILC회의에 한한다.

2) 정기적인 유엔인권기구를 상대로 활동

-종합적인 활동계획의 수립, 대 유엔 활동 점검분석

-실무 및 해외 협력단위 구성

-인권소위, 특별보고자, 실무위 등과의 정보 교환, 초청 (상황에 따라)

-51차 인권위원회 참여준비

-언론작업 담당자 및 계획

-그외 한국 인권관련 외교 모니터 활동

3) 국제회의의 참석과 준비

장 립 선 언 문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그리고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과거 우리의 오랜 역사는 이러한 가치와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에 의하여 발전하여 왔다.

일제의 식민지, 분단과 전쟁, 냉전과 군사독재로 이어진 우리 현대사는 민중의 고통과 고난, 기아와 질병, 파괴와 가난,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의 억압 등 수많은 인권침해로 얼룩져 왔다. 또한 오늘날 급격한 산업화·근대화과정에서 비롯된 노동·환경·주택·보건문제 등으로 민중의 생존권은 물론 인간존엄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인권단체들의 치열한 뜻을 모아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결성을 엄숙히 선언한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어떠한 형태의 인권침해와 탄압에 대하여도 단호히 반대한다. 사상·양심·표현·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정치적 시민적 권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요체이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인간성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학살, 고문, 폭력 등을 철저히 배격하며 이를 자행하는 어떤 집단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누려야 한다. 노동기본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건강·교육·환경권 등을 차등없이 향유하여야 한다. 여성, 아동, 노인들도 차별과 학대, 소외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합리화될 수 없는 생존권에 대한 탄압과 위협에 반대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증진할 사회제도의 정비에 노력할 것이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모든 민족의 자결권을 존중하며 민족적 억압과 불평등에 저항하는 투쟁을 지지하고 외세의 지배나 간섭, 경제적 예측과 불평등으로부터 오는 인권침해를 단호히 배격한다. 또한 이념·지역·인종·성별·종교·언어·문화적 차이에 따른 차별대우와 탄압에 대하여 반대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이제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국민들의 인권의식 성장에 주목하면서 여전히 우리 현실을 움아매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수십년간 우리 사회를 파행으로 몰고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 일본제국주의와 전후 냉전시대의 유물이며 정권안보의 도구로 전락한 국가보안법은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으로 인권신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둘째, 그동안 경제적 성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권리도 빼앗긴 채 묵묵히 일해온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기본법은 국제노동기구의 수준으로 조속히 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민과 도시빈민에게도 의료, 교육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그동안 자행된 반인륜적 인권침해 범죄와 야만적 범죄자들을 잊거나 용서하자는데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법의 이름을 빌거나 아예 실정법조차 무시한채 권력을 남용하여 자행된 범죄행위의 진상은 날날이 밝혀져야 하고 범죄자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진상규명과 정당한 처벌만이 우리 후손들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줄 수 있는 길이며 뼈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고 희망찬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길임을 확신한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1993년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소중한 활동과 경험의 산물이다. 인권운동단체들간의 상설협의조직으로 출범하는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오늘 창립을 계기로 인권운동의 현안에 관하여 진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며 국내에 기반한 국제인권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동시에 국내외 인권정보의 수집과 활용, 각종 인권교육활동 등을 펼쳐나가려 한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이땅의 민중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1994년 6월 20일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인권단체협의회(Korea Human Rights Network : KOHRNET) 연락처

상설 연락처 : 민변 전화 : 522-7284 팩스 : 522-7285

참가단체 주소 및 연락처 (6월 20일 현재, 가나다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화 : 522-7284 팩스 : 522-7285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95-2 센츨리빌딩 704호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전화 : 747-43645 팩스 : 747-8363

136-03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1가 44 삼우빌딩 301호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화 : 796-83645 팩스 : 796-8366

140-0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화 : 763-2606, 765-5282 팩스 : 745-5606

110-5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불교 인권위원회

전화 : 745-1853 팩스 : 745-1854

110-3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0층 16호

인권운동 사랑방

전화 : 796-83645 팩스 : 796-8366

140-0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국 민주주의 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

전화 : 763-4700 팩스 : 743-2835

110-5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2동 651-30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전화 : 764-0203 팩스 : 744-6189

110-701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6호